

의안번호	2216341
의 퇴 인	김종민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.
추계번호	26A0479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 (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. 다만, 필요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－ (현행)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<u>필요하면</u> 대·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<u>할 수 있음</u> － (개정안) 매년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<u>실시하여야 함</u> . 필요시 특별 실태조사 를 실시할 수 있음	의무규정 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4조 (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열거하면서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, 필요시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)
 - 현행법 제14조는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실태조사의 주기, 조사 결과의 공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,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결과 공표 의무 등을 법제화하려는 취지임
- 현행법에 근거하여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
 - 2026년 기준 제조업 위주의 상생협력 실태조사에 3억원,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¹⁾

[표 1]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관련 재정사업 현황

사업명	내용	예산(백만원)		
		2024	2025	2026
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(4231-301)	상생협력 실태조사 (제조업 위주, 대기업과 협력사의 상생협력 수준 파악)	-	300	300
	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(배달·숙박·오픈마켓 대상, 이용사업자(입점업체)의 수수료 부담 등 이용 현황 파악)	-	50	100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- 이를 고려할 때, 개정안과 같이 매년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비정기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할 경우 실태조사 실시 횟수 및 조사항목 등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

1) 중소벤처기업부는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실시 근거는 법 제정(2006년) 당시부터 존재하였으나, 2025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함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특별조사의 실시 여부 및 조사범위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에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